

제 호		
<b>긴급차단 해제 명령서</b>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법인명(대표자명)	
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적발일시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3항에 따라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합니다.		
년 월 일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		
※ 담당자 정보		
① 성명:	② 소속:	
③ 전화번호:	④ 전자우편주소:	
⑤ 주소:		
비고		
1.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 해제 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.		
2. 해당 긴급차단 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로,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.		

연번	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적발일시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